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정지원 의원 외 11인

2. 제안이유

-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용어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청소년우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청소년의 건강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위기청소년, 청소년부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 「지역보건법」 제11조
 - 「지방자치법」 제13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청소년 복지 규정 일원화와 청소년 지원 근거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5. “청소년부모”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등의 청소년복지 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보호지원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보호지원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 교육 등 보호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복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용어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청소년 기본법」의 정의를 인용하였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관련 법령>

□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20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 3. (생략)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 8. (생략)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1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5. (생략)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 정 안

제4조(청소년우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를 따른다.

- 안 제4조는 청소년우대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의 청소년의 우대를 인용하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 및 여가시설 등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관련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1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제5조(청소년의 건강보장) 시장은 구미시 청소년의 건강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질병 예방 및 건강 교육 등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 사업
2. 청소년 정신건강 및 구강보건 증진 사업
3. 청소년의 체력·건강 기준에 따른 검사·진단 사업
4.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
5. 청소년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관리 사업
6. 청소년 약물 오남용 관리 및 흡연·음주·마약 예방 관련 사업
7. 그 밖에 청소년의 건강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안 제5조는 청소년의 건강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인용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체력 향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약물 오남용 및 마약 예방 등 다양한 건강보장 사업의 지원근거를 명시함.

<관련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1호, 2022. 12. 27., 일부개정]

-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제6조(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기본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 및 소요 재원
 3.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청소년, 청소년부모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2.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3. 위기청소년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
4.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소년부모 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사업
2. 법 제18조의3에 따른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생활 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등 복지지원 사업
3. 법 제18조의4에 따른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4. 법 제18조의5에 따른 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위기청소년과 청소년부모 지원 기본 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사업 등의 추진 근거를 명시함.

○ 종합 검토 결과,

- 우리시의 청소년 인구는 2024년 2월 기준 71,281명으로 구미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전반적인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위기청소년과 청소년부모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함.
- 이에 본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규정 명문화 등을 통하여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복지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교육청소년과로 일원화하여 청소년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

※ 별표 (참고자료)

○ 2023년 구미시 청소년복지 사업 현황(2023년 말 기준)

사 업 명	소관부서	사 업 내 용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 원	교 육 청소년과	•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 • 사업대상 :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부모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 • 사업내용 :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12개월지원 • 사업예산: 49,680천원(국 24,840 도 7,4502 시 17,388) • 지원실적: 16가구, 총 32,400천원 ※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청소년부모 가구 : 26가구
청소년 부모 교육프로그램	교 육 청소년과	• 교육일시: 2023. 10. 28.(토) 10:00 • 교육장소: 구미시 가족센터 • 교육대상: 관내 자녀를 양육중인 청소년 부모 7가구 • 교육내용: 청소년부모 육아코칭 및 토크콘서트 실시 • 사업예산: 1,000천원
여성청소년 생 리 용 품 바 우 처	교 육 청소년과	• 지원대상: 9세~24세 여성 청소년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금액: 월 13,000원(연 156,000원) • 사업예산: 179,784천원(국89,892 도26,968 시62,924) • 지원실적: 1,364명, 131,599천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구 미 보 건 소	• 지원대상: 19세이하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임신부 및 만2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120만원 범위 내) • 사업예산: 6,000천원(국비50% 도비15% 시비 35%) • 지원실적: 9건, 5,861천원
청소년 한부모 가 족 자 립 지 원	가 족 보 육 과	• 지원대상: 24세 이하 한부모 가정(중위소득 65% 이하) • 대상인원 : 20명 (모자가구 19, 부자가구 1) • 사업예산: 48,000(국비 80% 도비 6% 시비 14%) • 지원내용 - 양육비: 월35만원, 지원실적 20명 -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지원실적 1명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연 154만원, 최대2년